

업무계획

“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”

2010년도 업무계획

2010. 1.



국가인권위원회

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

〈목 차〉

〈2009년 업무평가〉	1
1. 2009년 대내외 환경과 의미	1
2. 전략목표별 업무평가	1
〈2010년 업무계획〉	11
<총론 및 총괄도>	11
1.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	15
2. 아동·노인 인권 향상	21
3.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	28
4.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	35
5.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	41
<특별사업>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	47

2009년 업무 평가

1. 2009년도 대내·외 환경과 의미

- 정부에 의한 조직 개편은 국내·외 인권사회의 핵심이슈가 되었고, 위원회 출범 후 최대 위기요인 발생
 - 독립성 논란 및 조직축소는 위원회 위상 하락은 물론 고유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 노정
 - 관련 국가기관들의 인권업무 비협조는 이중적 고충을 초래
- 인권 시민사회의 전반적 자유권 후퇴 주장 및 사회권에 대한 우려는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요구. 특히, 2009년은 어느 해보다 많은 인권현안이 발생 하였고, 대응과정에서 국가 인권기구 역할의 중요성과 과제를 안겨줌
- 제4대 위원장이 조직축소 개편 등의 문제로 중도 사퇴하고, 제5대 위원장 취임으로 현 지도부가 출범, 새로운 역할 도모 시도
-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(ICC) 의장국 수입 중도 포기 관련 국내외 인권사회의 논란 발생
- 인권시민단체 및 국가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관계 미흡에 따라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
- 국가재정법 본격 시행에 따른 성과위주 조직평가 시스템으로의 대외 재정환경 변화

- 유엔 등 국제인권사회의 관심 등 국제인권 국내화, 자유권 역할 증대, 사회권 분야 인권수요 증가는 전환기적 기회요인
- 어려운 시기에 위기요인을 기회요인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로서 본연의 역할 및 독립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,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새로운 위상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.

2. 전략목표 별 업무평가 1)

① 기본적인 자유의 실질적 보장

- 집회의 자유, 통신비밀보호법, 전기통신기본법(미네르바 사건) 등 인권현안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과 사형제 폐지와 같은 유엔 핵심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독려 등 성과를 보임. 인력감축 상황에서도 전반적인 자유권 정책분야는 전년 수준의 실적 유지
- 한편, 민간인 사찰 등 일부 심각한 인권현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가 상존. 위원회의 존재가치 및 핵심기능이 자유권 분야의 감시·견제기능임을 감안,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처 필요

-
- 1) 2009년도 업무계획은 인권증진행동계획(3개년)에 따라 일상업무를 제외한 전략적 목표를 정하여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업무로서, 조직 개편(2009. 4. 6.) 전에 수립한 과제임.
 - 2) 조직개편으로 조직과 인력이 감축 되었지만 전략목표별 업무계획은 변화없이 추진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추진됨. 그러나 진정사건(전년대비 진정 10.7%, 상담·민원 25.2% 각 증가), 현안인권 및 교육 수요 증가 등의 상황에서 전략목표 별 업무수행 상의 현실적 애로와 한계가 많은 해였음.

-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정보인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원회가 동 업무에 부진. 그러나, 2009년도는 사실상의 정보인권 정책업무 원년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, 정보인권특별보고서 초안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거둠
 -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2010년도에는 구체적 분야의 검토 및 정책권고로 정보인권 향상 활동 기대

- 구금시설 등 다양한 기획조사를 통하여 인권취약분야에 대한 접근성 및 제도적 접근으로 구금시설에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자 노력. 다만 과제선정의 문제 및 과도한 진정사건 등으로 체계적이고 집중력 있는 기획조사에는 한계
 - 정책 및 조사의 유기적 협력체계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와 정책연계 방안 모색 필요

-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, 동 선택의정서 가입의 필요성 및 의의를 재확인하고 국제 인권기구 등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. 관련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 설득 등 후속조치 필요

② 아동·노인 인권 향상

- 다소 지연은 되었지만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, 국제워크숍을 통한 차별 대안제시 등 사업을 통해

학생 인권개선을 위한 학내에서의 성과제고

- 특히, 초·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및 권고는 인권친화적 교과서 제작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평가됨.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방식도 좋은 방안으로서, 모니터링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 자체 교육도 되는 이중적 효과를 거둠.
- 학생인권과 관련한 여타 사업의 경우 효과성 평가가 필요해 보이며, 개별사업들이 다소 산발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.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 가능성이나 영향력에 대한 검토 및 이를 높이는 방안 연구 필요
- 스포츠선수 인권사업은, 시민참여형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전문가·시민사회 및 관련부처와의 네트워크를 구축,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
-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제작은 내실있게 추진되었고, 스포츠 인권에 관한 흥미롭고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
- 다만,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기동력있게 대응하지 못한 한계 노정에 따른, 조사부서와 정책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로 대응 필요
- 노인인권 사업은, 사업 전개 원년으로서 다소의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이 시도 되었다는 데 의미. 다만, 노인복지와 구별되는 노인인권 개념 정립에는 미흡하므로 극복해야 할 과제

- 노인인권 지킴이단의 경우 신선한 발상으로 인권과 인권위를 알리는데 기여, 첫 해 실험적 단계로는 일정 성과를 거둠. 특히 지역 인권사무소가 지역공동체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 가능
 - 다만, 홍보 부족 및 지킴이단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하였고, 실무인력 부족으로 활동 모델 수립에 미진
- 노인인권 정책과 교육, 방문조사 등이 상호 연관성 없이 따로 진행됨에 따른 극복노력 필요, 또한 위원회 전략사업 2년차로서 보다 다양한 정책의제를 개발, 대안제시 노력 필요
 - 노인분야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인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 및 인력·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모색 필요
-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인권개선 사업은, 실종아동법과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성과와 내부 차원에서 검토는 이루어 졌으나 외부 정책성과에는 미흡.
 - 2009년도 추진한 정책토론회 및 모니터링 등 제도 검토 노력을 토대로 성과제고 노력과,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을 감안 위원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 지원 필요

③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

- APF에 UPR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출하고, 유엔사회권위원회

정부보고서 심의절차에 능동적 참여를 통해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등 국제적 위상강화에 기여

- 사회권 심포지움 및 사회권 지표개발 사업은 연계 추진되어 예산절감 및 국제기준 국내이행 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
- 다만, 사회권 지표 개발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인 점을 감안, 사회권적 현안인권에 좀더 정책 개선권고 강화 필요
- 건강·주거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검토를 본격화 하고, 취약계층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함
- 강제철거에서의 거주민 인권보호방안, 도시정비법시행규칙 개정안, 비주택 거주민 인권현황 실태과약, 노숙인 범죄피해 관련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, 용산참사를 계기로 주거 취약 계층의 인권향상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주거권 관련 입법개선권고 및 사회인식 제고노력 필요
-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요인 중의 하나로서 위원회가 비정규직법 개정안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,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대한 의견 제시는 시의적절
- 텔레마케터 및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관련 사업은, 현장에서 ‘의자캠페인’ 진행과 여성연예인 실태조사 추진 등 불가피한 요소는 있었지만, 당초 계획대비 실적에는 미흡
- 시민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등이 인권정책 사업의 지속적 선순환 구조창출이 관건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,

위원회의 대외정책 교류사업 미흡에 따른 전략적 대안 필요

- 사회권에 대하여는 양극화 심화 등의 상황에서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개입을 보다 강화하도록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제고가 필요한 시점

4]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

- 다문화 분야 사업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, 전반적으로 내부 검토 및 논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, 정책권고 등 대외 성과가 타 전략목표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
 - 다문화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등을 통해 일정 역할은 하였으나, 전체적으로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략 목표가 부재한 면이 있으므로 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극복노력 필요
- 이주인권 PT를 운영, 서울프로세스 후속 사업으로 몽골 인권 위원회 등과 MOU 체결, 이주여성을 위한 결혼중개업법, 고용허가제, 출입국관리법개정안, 미등록 이주아동교육권보장 등 법제 현안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 성과를 보임
 - 그러나, 미등록이주자 문제, 과잉단속, 인종차별적 사회문제 등 민감하고 핵심적 이주인권 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현장 속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
 - 또한,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등 현장 및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정책의제로의 연계로는 미흡. 조사와 정책의 연계 추진

등 위원회 차원의 전략적 대안 모색 필요

-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인권교육기본계획(3개년)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다문화 인권교육기반을 마련함. 특히 '하나원' 정규과목으로서 인권과목 개설은 의미있는 활동임

5]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

- '차별금지법 제정' 성과목표는 대내외 여건 상 모니터링 및 간담회 수준으로 추진 되었으나, 성과목표로서 특별한 실적 으로 이어지지 못함
-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집·채용에서 고용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책자 발간 등 고용차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, 적시에 발간·배포 되지 못하고 지연
 -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한 홍보·상담, 판단기준 정리 및 조사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법 시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,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동 법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에 포함하려는 계획을 차단하는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
 - 다만, 법 시행 원년임을 감안하여 연령차별 직권조사 활성화 등 필요성은 있었으나, 자체시정 등으로 확대되지 못함.
- 성평등기본법 제정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,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및 포스터 제작 등 성차별시정 및 성희롱 구제기관 으로 적극적 활동성과를 보임.

-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편의제공 판단 기준 구축·이행가이드라인 발간·장애인권리협약 국제세미나·장애인 교육권 및 웹 접근성 관련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
 - 다만 많은 사업추진에 따른 한계 등을 분석, 향후 집중력있는 전략적 접근 필요
-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「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」를 발간
 - 다양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외되어 왔던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진단하고, ‘인권’의 관점에서 조명한 정신보건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, 대안을 제시한 종합보고서로서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획기적인 성과
 - 다만, 실현가능성과 객관성을 중시한 결과,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등에는 다소 미흡
 - 향후 과제로, 권고안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다양한 관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필요
- 정신보건분야 법적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대응능력 확보 및 장애분야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기술·인력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
-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국내 첫 조사로서 의의가

있으며, 전문가 및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의미있는 활동임. 이를 유지·발전시켜 나갈 구상 필요

- 상대적으로, 여성노동자 감정노동 및 건강권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므로 성과제고 노력 필요
-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관련 권고는 주목할 만한 성과임. 미래기획위원회 등에서도 호평을 받았는데, 진정사건을 제도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은 좋은 모델임.
-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여성인권의 제도화 등 많은 진전은 있었으나 아직은 미흡(2009. 10. 세계경제포럼;WEF 발표, 양성평등지수는 134개국 중 115위), 성차별 및 여성인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

<특별사업> 북한인권 개선

- 2008년도부터 북한인권 사업은 본격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 진행으로 연속성이 있었고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둠
- 특히, 정치범수용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탈북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유의미한 성과로서, 2010년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한 단계 마무리 필요
- 북한특위의 활동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 등을 감안, 존속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
- 한편, 유엔 총회의 지속적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, 국회의

북한인권법(안) 발의 등 대내외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의 불가피성이 제기되는 상황임.

- 특히,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에서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 역할과 입장을 견지하면서, 다양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의제를 개발,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.

- 국제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방안 병행 등

- 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연구 활동, 실태조사 등을 전개하여도 담당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계 시너지 효과에는 한계 등을 고려, 적극적 인력 확보 등 노력 병행 필요

2010년 업무계획 총론

□ 수립 배경

- 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(2009~2011) 기초와 방향을 유지한 2010년도 업무계획 수립 지침 마련, 통보
- 위 수립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 2009년도 업무평가, 2010년도 환경요인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한 부서 업무계획(안) 수립
-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인권증진행동계획에 의한 전략목표에 맞는 협의·조정 등 논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업무계획 확정

□ 경과

- 사무처 업무계획 수립지침 마련 : 2009. 11. 3.
- 수립지침 간부회의 논의 및 설명회 : 2009. 11. 3.
- 각 과별 업무계획(안) 작성 : 2009. 11. 26
- 과별 업무계획에 대한 국내 조정, 작성 : 2009. 12. 4.
- 위원회 업무계획 선택·조정을 위한 실무협의 : 2009. 12. 24.
- 2009년 업무평가 및 2010년 업무계획 초안작성 : 2009. 12. 28.
- 각 부서별 총괄담당 간담회 논의 : 2009. 12. 28.
- 확대간부회의 논의 : 2009. 12. 29.
- 사무처 잠정(안) 확정 : 2009. 12. 31.
- 인권단체 설명회 및 의견수렴, 반영 : 2010. 1. 8.
- 상임위원회 상정, 심의 : 2010. 1. 14.
- 전원위원회 상정, 의결 : 2010. 1. 25.

□ 2010년도 업무계획(안) 구성 및 특징

○ 인권증진행동 3개년 계획의 기초와 방향 유지

- 환경변화에도 5대 전략목표 및 특별사업을 유지
- 연속성을 위해 기존의 성과목표를 가급적 유지하고, 전년도 20개 중 환경변화 요인 등을 감안 3개 변경
 - * 양심, 사상 및 종교의 자유 ⇒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
 - * 비정규직 인권 보호 ⇒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(포괄화)
 - * 차별금지법 제정 ⇒ 삭제
- 5대 이행지침을 위원회 모든 업무계획에 반영 노력

○ 대내·외 환경 변수에 전략적 대응

- 조직개편에 따른 선택과 집중 도모
- 2009년도 진정사건 증가(10.7%) 및 교육수요 증가 등 일상 및 현안업무 대응을 위한 고려 필요
- 위원회를 둘러싼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을 분석, 수립
- 환경변수에 전략적으로 접근, 관리과제에 우선 지원
- 시스템 및 중점목표 별 평가를 통한 영역별 업무개선 시도

○ 사전 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통한 체계적 업무계획 수립 도모

- 중점방향, 적극적 사업평가 반영, 환경동향 분석, 성과위주의 사업계획 수립, 부서간 협의·공조로 시너지 제고, 체계유지 등

**2010년도 전략 및 성과목표 별
업무계획**

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

1.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

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

경찰서 유치장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예방하고, 시설·환경 및 처우 등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

- 인권침해 예상분야 실태파악 조사
 - 석방지연, 과도한 신체검사, 장구사용 등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
 - 사생활 비밀, 변호인 접근권, 면회보장, 의료접근권, 진정권 등
- 피구금자 시설, 환경 및 처우개선 사항 파악
- 장애인,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및 처우 등 파악
- 조사결과에 대한 정책협의 등 대안제시

② 주취자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

- 최근 주취 피의자가 증가하고,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관련 진정증가에 따른 시민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,
- 동 문제로 지구대 경찰관 사기저하 요인에 따른 대안 모색

- 주취 소란자의 실태와 경찰관의 과잉대응에 대한 실태조사
- 주취자 문제로 인한 경찰의 애로 및 해결방안 실태파악
- 주취자 보호규정에 대한 개선안 마련, 대안 제시

- 형법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, 경찰관직무집행법, 주취자
안정실운영규칙 등에 나타난 문제점 및 집행실태 파악, 개선

③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인권상황 개선

군병원 정신과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이 전무, 인권보호적 시설
및 처우 등 시급한 인권상황을 제도적으로 접근, 개선방안 제시

- 민간병원 정신과 인권상황과 비교평가, 입원과정 입원환자
처우 및 국제기준 준수여부 등 군 입원사병 처우실태 등
을 파악, 개선대책 강구
- 정신과 전문의 참여 해당 군 정신과 방문조사 등 추진
- 2009년도 실태조사 등을 종합, 인권상황 제도개선안 마련

2.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강화

① 사이버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 강화

- 국내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요구
-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주요 표현행위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
- 정부의 사이버 규제 등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
법령·제도 등의 검토를 통한 대안제시 등 개선 촉구 필요

-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삭제 제도 검토
및 개선대안 마련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

- 온라인 상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법령·정책 및 법안이나 관련 재판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적시에 의견 제출
- 2010. 5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대응 준비

② 집회시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강화

집회시위의 자유 등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현안 자유권 분야에 대한 적극적 권고, 의견표명 및 사법부 의견 제출 등 대응이 국가인권기구의 핵심기능으로서 긴급

-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단체증 건에 대한 정책검토
- 불기소처분 피의자에 대한 생체정보(십지지문) 과잉 관리 건
- 공개수배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건
-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등
- 조사국 이관 현안 자유권 등에 대한 정책 검토, 의견 제시

3.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

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NAP), 보편적 정례검토(UPR) 및 각 유엔조약기구 권고안 이행점검 활성화

- 위원회 권고 NAP는 핵심 인권정책 및 청사진으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 적극적 이행 모니터링 및 대안 모색 필요
- 제2기 NAP(안)(2012~2016)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대응 준비
- 유엔인권이사회 UPR권고안 이행 점검
- 우리나라가 8개 조약기구 중 7개 이사국으로서 이행점검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

-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NAP 이행점검 및 대응 추진
- 수정 NAP에 반영된 UPR 권고 및 각 조약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
 - 민간평가단 구성, 워크숍 개최(격월), 최종보고서 제출
- 각 국 UPR 및 조약기구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
-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의 적정성 등 관련 정책 지원
 - 정부 가입관련 모니터링 및 검토, 필요시 의견표명 등 추진
- 조약기구 심의 준비 등 대응
 - 아동권리협약위원회 심의 전 실무단 제출 의견서 준비
 - 자유권규약위원회, 여성차별철폐위원회,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, 고문방지위원회 국가보고서 제출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

②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적 이행 강화

-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제2항은 동 협약의 이행 감독 및 점검 의무를 국가인권기구에 부여
- 2010. 12월.까지 제출될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및 협약의 이행상황 결과 제시 등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필요

- 장애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점검
 - 국내적 이행상황 촉진을 통한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권보호
- 장애인권리협약 국제회의(세미나) 개최
 - 국제 유명 장애차별 전문가 초청, 발제 등을 통한 인식 확산

4 정보인권 증진

① 정보인권 관련 의식 향상 및 제도 개선

- 정보화 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정보인권 수요의 급속한 증가
- 정부는 2012년까지 국가정보화에 5조2천억원 투입 등 정보촉진 가속화 및 본격적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
- 그 동안 추진한 정보인권에 대한 기초적 틀을 토대로 현안 정보인권분야를 체계적 접근, 다양한 정보인권의 정책대안 마련 시급

○ 정보프라이버시권 보장실태 및 제도 개선

-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실태조사
-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
- 정보인권 대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방안 마련

○ 정보 주체의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 방안 모색

- 개인정보 수집은 용이하나, OECD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8 원칙의 열람·정정·삭제 청구권 등 정보 접근권 보장은 미흡
- 개인정보 수집기관과 정보주체 사이에 불균형 발생에 따른 법·제도개선 방안을 모색

○ 정보문화 향유권을 위한 사회적 논의 수렴

- 정보의 공유 문제가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과의 충돌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발생

- 올바른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도모

○ 유비쿼터스 제도 구축에 따른 정보인권 정책대안 마련

- 유비쿼터스 시대는 정보공유와 연계가 강화되면서 빅브라더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심각
- 정보 프라이버시의 강화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, 전문가 간담회, 세미나 개최

II 아동 · 노인 인권 향상

1. 학생 인권 개선

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조성

- 학생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필수적
- 2009~2011년 교과서 개정계획에 따른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 필요
- 청소년 인권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청소년 리더그룹 발굴,육성
- 인권교육 중심대학이 지역의 인권교육지원 센터로 역할 도모

- ‘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침서’ 제작 보급, 모니터링
 - 학교현장에서 교사 및 학생들의 손쉬운 이해 도모
- 제4기(2010~2011년)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
-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모델 개발 연구
 -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및 전문인력 육성·관리
 - 인권친화적 교과서 및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의견표명 등 대안제시
- 청소년 인권리더 양성 과정
 - 주요 청소년 인권이슈에 대한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개최
 - 모의 이사회 참가자 대상 청소년 인권리더 양성과정 운영
 - 교과서 모니터링, 청소년 기자활동 등 위원회와 연계활동 도모
-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 활성화
 - 법학전문대학원 기관실무 수습, 교육과정 내 인권과목 개설 추진
 - 총장간담회 및 실무협의회 등 협의체계 운영, 인권동아리 형성 등

② 아동·학생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

아동·학생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관리자, 유치원, 초중등 교육 및 학교 인권교육 강사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 개발(Up-Grade) 운영, 인권교육 저변 확대 필요

- 유치원·초 중고등 교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
- 학교 관리자 대상 인권교육 과정 운영
- 아동 및 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

2.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인권 개선

①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아동인권 개선

- 국제인권기준과는 달리 우리사회는 아동을 권리주체가 아닌 보호주체로 간주, 정책·법령 미흡으로 인권이 취약한 분야
- 취약계층 및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영역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
※ 아동권리협약 제3.4차 정보보고서 본 심의가 2011.1월로 확정, 2010.10월 경 워킹그룹 회의가 예상, 심의대비를 위해서도 필요

- 아동성폭력, 아동급식, 아동학대 등 주요이슈 관련 정책·법령 검토
 -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책검토 등
 - 입양특례법이나 아동학대 등 지속적 이슈사안에 대한 검토
 - 아동의 참여권 보장관련 등 정책개선 검토 등
- 사각지대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 및 정책검토

-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 되어 왔으나,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실태조사 우선 실시(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)
-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, 정책권고 실시
- 아동권리협약 제3.4차 정부보고서 심의 대비, 모니터링 및 의견서 제출 등
- 이해하기 쉬운 아동권리협약 해설서 제작·배포
 -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, 관계부처와 협의 배포 (협약 가입 20주년이 되는 2010년 배포)

3. 스포츠 선수의 인권보호

① 스포츠 선수 인권정책 연구 개발

-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·내외 사례연구와 실태조사, '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'에 대한 여론수렴과 시민 참여를 확산함으로써
- 스포츠분야 인권을 개선하고, 인권에 기초한 국가 스포츠 정책 수립 등 실질적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추진

○ 스포츠 인권가이드라인 여론수렴 및 구체화

-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실행회의를 구성, 일선 현장에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및 행동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아래 각 분야별 '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' 을 작성
 -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, 성폭력 예방,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

인간적 발전, 학습·전지훈련·대회 개최 관련,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관계자 활동, 여성의 스포츠 참여 증진 등

- 지역 시민단체, 교육청 및 스포츠 조직들과 협력, 광범위한 여론수렴

○ 인권관점의 스포츠 정책 및 제도 개선

- 「스포츠 인권 정책포럼」을 지속 운영, 전문성과 현장성에 기초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공론화
- 국회 입법, 정부·자치단체의 스포츠 정책과 실행과정에 대한 인권 관점의 의견제시를 통해 실행 상의 효과성 제고

○ 스포츠 인권 지원센터 구축

- 전문성 등을 갖춘 시민단체와 협력 '스포츠인권지원센터(가칭)을 개설,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과 증진을 위한 상담,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중장기적으로 '스포츠 인권 전담조직' 설립 추진(영국, 호주의 예)

○ 스포츠 인권관련 해외 선진사례 연수

- EU 등 주요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(09년)을 바탕으로, 정부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, 현장 모범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선진사례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
- 스포츠 인권정책, 스포츠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메카니즘, 인권친화적 지도훈련법, 아동·여성·장애인·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참여 증진을 위한 시스템 등 체계적 교육, 연수

② 스포츠 인권 교육 활성화

- 그간의 성과로 스포츠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현장 공감대 확산
- 현장 주체들이 공감하는 스포츠 인권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, 스포츠 인권전문 강사의 지속적 양성
- 교육 정례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

○ 스포츠 인권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제작(리플렛 등)

- 분야별·내용별·대상별 스포츠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작, 배포

○ 스포츠 인권교육 전문 강사단 양성

- 관련 전문가를 재교육, 전문 강사단으로 위촉하고 보수교육

○ 스포츠 지도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

③ 스포츠분야 인권개선을 위한 기획조사(이적동의서 불허관련)

- 스포츠 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불허처분(전학제한 및 선수활동 제한)에 따른 운동선수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사 피해사례 진정사건이 지속 제기
- 관련 제도 및 일선 학교 및 감독기관 등에 대한 관행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 필요

○ 접수된 진정사건을 기초로 기획조사(직권) 추진

- 관련 학교, 교육청, 대한체육회 등 실지조사, 사례분석

○ 피해사례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한체육회 「선수등록규정」 등 관련규정 검토 등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

4. 노인인권 보호

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

-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노인의 경제적·사회적 지지 제도의 미흡으로 노인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점증
- 기존의 노인 복지정책, 건강정책, 노동정책, 주거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안을 제시
- 노인 당사자들을 정책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노인관련 정책과정에서 주체적 역할 견인

○ 노인인권정책자문단 구성, 운영

- 노인문제 전문가들을 위촉, 노인인권에 관한 연구 세미나 개최, 세부영역별 소논문집 발간
-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보험제도,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영역의 노인정책 관련 정책권고 등 추진

○ 「노인인권지킴이단」 구성, 운영

- 주요 5개 권역에서 총 300명의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선발, 교육하여 노인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
- 노인인권정책자문단과 함께 노인인권 증진방안에 관한 각 지역별 순회 토론회 개최
-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결과 보고서 발간

② 노인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

- 경제적 무능력·사회적 안전망 부재·노인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은 다양한 인권문제를 야기
- 노인당사자·지역주민·관련단체·정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노인 인권의식 제고 및 국가 인권보장정책 유도

○ 노인 인권교육 자료수집 및 분석

○ 노인 인권교육 과정 운영

- 노인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(기초, 심화) 운영
- 노인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

③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를 통한 취약 노인 인권향상

- 56세 이상 노인 45만명 중 치매환자가 8.6%(2009년)에 이르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치매환자가 거주(요양)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통해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제고, 인권침해 요인에 대한 개선과 사전 예방적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전개 필요
- * 경증 치매환자가 전체 70%로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필요

○ 수용 노인에 대한 욕설, 폭행 등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제도적 대안검토를 위한 방문조사 실시

-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치매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된 시설 중심으로 추진

○ 노인복지시설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기준 검토 등 노인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

- 해외 선전사례 등 권고에 필요한 연구 병행

Ⅲ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

1.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

① 사회권 지표 개발 및 시행

- 사회권지표 개발은 우리 사회의 사회권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회권을 확립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추진
- 2010년에는 교육, 주거, 건강, 소득보장의 영역에서 2개 이상의 지표개발 및 적용을 위한 사업을 전개(2009년 노동권지표 개발)

○ 사회권 지표 개발 영역 선정

- 자문 등을 통해 2개 영역 선정 및 여론수렴

○ 사회권 지표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표정교화

- 전문가그룹 협의체 구성, 보건복지가족부·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 구축
- 2008년 개발된 사회권 지표의 보완을 위한 연구

○ 사회권 지표 결과 도출을 위한 노력

- 통계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와 정책협의 추진

② 기업인권 정책 개발

- 세계화 및 기술혁신 등으로 기업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, 국민의 인권에 직간접적 영향을 초래
- 국제사회에서 기업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대 강화되고, ISO26000, GRI지속가능보고, 사회책임투자 등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각종 자율 규제들이 개발, 세계적 확산 적용

○ 기업인권 정책포럼 구성 및 기업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발간

- 2009년 실태조사 결과인 「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」 결과물을 활용,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권평가를 실시하고,
- 이를 기초로 우리 사회에서의 기업인권 경영 향상을 위한 「한국형 기업인권경영 가이드라인」을 발간, 배포
- 기업인권 정책포럼 워크숍 개최(격월) 및 최종보고서 발간

③ 기업인권 교육

- 기업의 영향력 하에 있는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협력업체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존중 선진기업문화 조성

○ 기업 인원교육교재 개발, UN GC에 가입한 주요 기업대상 인권교육 협의, 실시

○ 정책과 교육을 연계 추진, 효과성 제고

2. 빈곤계층 인권보장

① 취약계층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

- 경제위기 후 심화된 양극화는 수명, 흡연율, 영양상태 등을 포함한 계층간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짐.
- 2009.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, 우리나라는 삶의 질 및 환경과 관련된 많은 지표가 OECD평균에 미흡, 총 보건지출비(對 GDP 비율)도 2007년 6.4%로 OECD 국가 중 하위권 유지
- 건강권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모색 필요

○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

-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환경 및 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, 건강권 측면에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영역을 파악·검토하고, 그에 따른 법·제도·관행 개선방안을 제시
-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여론 확산 활동

○ 건강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

- 2009년 의료시설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논의과정의 연속
- 생활현장에서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당사자들의 건강권의 인식을 확대하고, 관련 정책에서의 건강권의 실질적 적용 및 작동 가능성을 확보
- 건강권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등
-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기준 마련 및 관련 법제개선 활동 등

② 노숙인 인권개선 방안 마련

- 노숙인은 건강권 등 권리보장에 한계 및 사회에서 극단적 배제
- 거리 노숙인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, 체계적 대책 미비로 지역사회에 재정착의 어려움, 범죄피해 등에 노출
-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, 체계적인 인권개선 대안 제시 필요

-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사업 추진
- 노숙인 관련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 및 관계자 의견수렴
-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및 노숙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
-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, 인권침해 실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법령·제도·관행 개선권고 추진

③ 주거 취약계층 인권개선

- 주거권은 건강권, 교육권 등 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핵심적 권리임에도 사회적 인식과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낮은 수준
- 재개발사업 과정에서도 보상 수준 등의 한계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 한계, 지역 거주민의 재정착에 어려움(80%정도)
- 따라서, 주거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·정책의 모니터링 강화 및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

- ※ 2005년 현재(인구주택총조사) 주거 빈곤층 가구가 대략 68만 가구(160만명)
- 지하(반지하) 58만 6천 가구(142만 명), - 옥탑방 5만 가구(8만 명)
 - 판잣집·비닐하우스·옴막·동굴 4만 5천 가구(11만 명) 등

- 비주택거주민 인권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유
- 재개발과정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
-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
- 주거권 관련 주요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수렴
- 주거권 관련 법령,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권고

④ 빈곤계층 등 경제적 약자 인권향상 교육 강화

-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적 빈곤계층의 증가추세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여전히 미흡,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의 활동이 인권홍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
- 우리사회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집단인 언론인 등의 역할에 주목하여 인권옹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

- 빈곤계층, 언론인 및 시민대상 인권교육과정 운영
 - 노숙인시설, 비정규직 노동상담센터 종사자 등 교육과정 운영
 -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
 - ※ PD연합회, 기자협회, 언론재단 등 언론인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등과 협의, 기자 및 방송인 등 인권교육 추진
- 영화, 애니메이션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민대상 교육강좌 운영
-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
 - 집체교육의 한계를 고려, 언론인권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

○ 인권친화적 보도·방송물 발굴, 사회인식 확산

- 언론인에 대한 간접적 인권교육 일환으로 인권친화적 보도·방송물을 발굴·홍보, 그 과정에서 자발적 관심과 보도 등 유도

3. 노동 취약계층 인권 개선

① 근로빈곤층 등 노동 취약계층 인권 개선

- 최근 경제침체로 실질소득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초래
- 고용을 통한 기초적 삶의 수준 보장이란 측면에서 노동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생존 확보 및 노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필요
- 노동법의 한계 등으로 인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의제화 및 인권개선조치 필요

○ 재가(在家) 진폐 피해자에 대한 인권개선

- 진폐는 특성 상 15~20년 이상 후 발병. 1989년 석탄산업정책에 따라 정부의 폐광 이후 진폐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
- 현행 진폐 관련법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요양대상으로 한정하여 상당수 在家 진폐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, 제시

○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안제시

- 정부의 '비즈니스 프렌들리' 정책방향 속에 파견대상 업무확대 등 관련 법령개정이 예고됨에 따른,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문제의 심각 예상
- 법 개정안 모니터링 및 현안 이슈로서 인권적 대안제시

○ 국제노동인권규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권고

-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현행 노동관련 법제의 정비 및 국내이행 모색
- 2009.11. ILO 및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재차 확인 되었듯이 노동기본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의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
- 특히 주요한 노동쟁의 이슈가 비정규직임에 따라 이들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권개선방안 모색 필요

② 청소년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

- 노동시장 내에 청소년 알바가 보편화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문제를 비롯, 장시간근로·성희롱·산업재해·상습적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에 노출
- 근로자로서 권리의식 고양 및 근로감독행정의 강화를 위한 보완적 조치가 마련되어질 필요성이 있어 관련법령 및 정책개선 필요

○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권개선 정책 권고

- 저임금 및 임금체불 등 청소년 근로자에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법적 보호의 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부처에 정책 권고 추진
- 2009년 청소년 노동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

○ 기타 청소년 등 취약계층 관련 노동 현안인권 모니터링 및 검토

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

1.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

① 정부의 이주인권정책 가이드라인 수립

- 현재 정부의 이주 및 난민 정책은 통제와 관리중심, 동화와 흡수 중심의 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, 우리 사회 역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·인정하는 개방성과 유연성이 부족
- 한편, 우리사회 역시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함.
- 이를 위해 정부의 이주정책 수립과 이행에 지침이 되고 사회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

- 이주 및 다문화 정책, 제도 및 자료 분석
-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정책 분야별 추진연구위원회 구성
-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분야별 연구 및 워크숍, 간담회 실시
- 가이드라인 마련, 공청회 개최
- 최종 가이드라인 공표(년내)

② 사이버 공간에서 인종주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

-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익명성을 전제로 외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모욕 등 다문화 사회의 역기능 발생
- 다문화 사회의 부작용을 인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 공간상의 외국인 혐오 등 인종주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,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

- 사이버 공간상의 인종주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례수집, 전문가 간담회 실시
-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인종차별 모니터링을 위한 대학생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용
- 사이버 공간상의 인종주의 예방을 위한 제외국의 제도적 접근사례 검토
- 제도 및 정책권고 추진

③ 다문화 분야(북한이탈주민 포함) 인권교육 활성화

- 급속한 다문화사회에 따른 다양한 이주민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인권문화 조성
 - 이주민, 관계기관 및 단체, 종사자 및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, 콘텐츠 공모 등을 통한 차별개선

- 다문화 인권교육 기반 조성
 - 다문화 관련 정부부처, 지자체의 정책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
 - 다문화 관련 정부기관 등 인권교육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
- 이주민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콘텐츠 개발
-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 과정 운영
 - 전문강사 양성 심화과정 운영
 - 다문화 분야 종사자 및 당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
 - 북한이탈주민(청소년) 인권교육 과정 운영

④ 이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순회상담 강화

-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 맞춤형 방문활동 강화
-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기관 이미지 제고 및 인권 의식 확산

○ 다문화 인권향상을 위한 집중 순회상담 실시

- 고용허가제 이후 이주노동자 현장상담
- 결혼이주여성, 다문화 가정 인권상담 심층 모니터링
 - 지역 단위 다문화 상담네트워크 활용
 -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6회 추진

○ 사회적 약자를 위한 '맞춤형' 찾아가는 인권상담

- 2월 : 노숙자와 만나는 1박2일
- 3월 : 도시 재개발지역 철거민들과 주거권
- 4월 : '장애인의 달' 집중상담
- 10월: 거리에서 사는 노인들의 인권상담

2. 이주노동자 인권보호

①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간 양해각서를 통한 이주분야 협력 달성

- 2008년 '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'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, 이주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인권기구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인 '서울 가이드라인을 채택'
- 후속조치로 관련국 인권기구 간 MOU를 체결 추진

- MOU 체결 대상 국가인권기구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
- MOU 체결 대상 국가인권기구 방문·초청 및 MOU 체결
- MOU 이행 모니터링 및 이행 관계자 협력 지속

②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정책 대안 검토

-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
- 인권적 차원의 출입국정책의 유연성 촉구 등 정책대안 검토

-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
-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의 체류권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
- 이주노동자 사업장 방문 및 정부부처 실무자 업무협의
- 제 외국의 제도적 접근사례 및 벤치마킹을 위한 세미나 실시

③ 미등록 이주노동자(여성, 아동) 인권보호를 위한 방문조사

- 미등록이주자의 단속과정에 단속권한없는 자의 불법 단속참여, 보호명령서 제시 없는 불법체포, 연행 등 적법절차 미준수, 포승 등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사회적 문제 야기
- 특히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여성 및 미성년자 등 보호 외국인 처우 전반에 대한 인권보호대책 마련 필요

- 외국인보호소 및 외국인 전담수용시설에 대한 방문조사
 - 보호소의 경우 아동, 여성 등 외국인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실태 점검
- 방문조사 내용 및 방법

- 보호시설 내 외국인 기본권 제한, 보호기간의 장기화 문제, 보호시설 내 처우현황 등
- 보호소 수용자 및 종사자 조사를 통한 인권개선과제 발굴
- 인권개선 필요사항 검토, 권고 및 이행 모니터링

3. 이주여성 인권증진

① 서울가이드라인 후속 국제회의(결혼이주여성 포함) 개최

- 2008년 이주민 인권보호·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'서울 가이드라인'을 채택한 2주년의 해
- 이주민 송출국 및 유입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그동안 실천사항 등 성과를 공유·발전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이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

- 서울 가이드라인 후속 국제회의 주제 확정 등 계획 수립
- 국가인권기구 국제회의 개최
 - 국제회의 결과 관련 이해 당사자와 공유

② 난민여성의 안정적 체류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

- 2006. 6. 난민정책 권고에도,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미흡
- 난민은 인종, 종교·정치·사상적 차이로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입국한 사람들로서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·경제적 어려움에 봉착
- 특히 난민 여성은 탈출과정에서 공포감을 안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상생활에서 정서적, 언어적, 문화적 부적응 상태
- 난민여성이 국제난민협약에 근거한 안정적 정착지원체계 모색 필요

- 난민여성 실태 파악,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간담회 실시
- 난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미나 개최
- 현장방문조사 추진,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
- 개선사항 검토, 정책 권고 검토

4.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

①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정책 추진

- 2008.8.현재 체류 등록 이주아동은 69,987명(법무부), 미등록 아동은 8,259명(11.8%)으로 추계되나,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
-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과 정착과정은 매우 불안정한 삶으로 특히 부모의 낮은 환경으로 의료 등 각 영역에서 인권사각지대에 있음.
-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서 검토, 불안정한 지위에 따라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여 정책권고 추진

-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사례 인터뷰 실시 및 인권현안 파악을 위한 전문가 감담회 실시
-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 가정방문 조사
- 시민단체, 정부부처 관계자와 실무 협의
- 외국의 제도적 접근사례 및 벤처마킹을 위한 세미나 개최
- 의료 등 각 영역 제도검토 및 정책권고 추진

V

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

1. 고용에 있어서 차별개선

① 고용차별 기반 구축

- 고용차별 시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, 실효성 있는 고용차별 예방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2차 고용차별 예방책자를 제작,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

- 1차 고용차별 예방책자(모집·채용 관련, 2009년) 발간 관련
 - 다양한 홍보 및 간담회 추진
- 2차 고용차별 예방책자(임금차별 등) 발간관련
 -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충실하게 구성하고, 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활용효과 제고
- 기업 인권교육(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) 콘텐츠로 연계 활용

② 연령차별금지법 시행관련 기획조사 등 시행효과 극대화

- 2009. 3. 모집 및 채용부분을, 2010.1.부터는 임금, 승진, 해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주, 근로자 등 당사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행효과 제고

- 연령차별금지법 홍보를 강화하고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법 시행효과 확대는 물론, 연령차별 조사의 전문성 제고

- 고용상의 연령차별 관련 기획조사 강화
 - 기업, 공공기관 등 고용상의 연령차별 실태조사
 - 연령 차별 중요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적극 추진

- 연령차별금지법 안내 리플렛 제작, 배포로 인식 확대
 - 10,000부, 기업 및 취업관련 단체, 전국 71개 고용안정센터 등
- 모집·채용 이후단계 고용상의 연령차별 조사메뉴얼 제작
- 상담활동 강화, 리플릿 배포 등 계기마다 연령차별 홍보강화
 - 기획조사는 기획홍보와 연계 방안 모색

2. 장애인 차별 개선

①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보호

- 장애인 차별이 광범위한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, 개별 영역 차별시정은 장애인 인권개선에 한계, 체계적인 실태조사 등 기획조사를 통한 정책제도적 접근으로 실효성 도모
-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과 이해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, 단체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간담회·토론회 개최

-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정책활동
 -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
 - 고용, 교육, 서비스 제공 영역 : 2010년
 - 행정·사법, 참정권, 연구결과 종합·배포 : 2011년
 - 장애시설분야 점검지표 마련, 조사방법 검토
 - 전문가 자문, 유관기관 및 단체 정책 간담회(토론회) 개최
 - 장애인시설분야 실태과약 등 실태조사 추진
-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토론회
 - 초기 시행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실효성 강화방안
- 장애인차별시정 결정레짐 발간

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

-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안정적 시행 도모
-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내용 및 기준을 사전 알림으로써, 차별행위 예방 및 장애인 인권보호·증진

-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구성
 - 거점지역(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)별 모니터링단 구성
-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대상 교육(워크숍 등)
-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실시
 - 장애차별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4대 권역별 모니터링 등을 포함 모니터링 실시 및 매월 결과보고서 제출
-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활동 보고

③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

-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시행 등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권교육 수요 증대
-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생활 현장에서의 인권관점 도입 등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활동이 긴급

- 장애인 차별의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운영
 -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, 강사양성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
- 장애인 관련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
 - 인권교육의 접근성 증진 등 교육희망자 편의도모를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시스템 관리 및 콘텐츠 제작

3. 정신장애인 인권보호

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차별 및 편견 해소

- 정신장애인은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, 적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비자의 입원, 수용, 퇴원, 요양, 지역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음
- 개별 사건으로 구제에 한계를 감안, 실태조사 및 정책 모니터링 등 제도적 접근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·증진 도모
- 「정신장애인 국가 보고서」 후속 이행상황을 점검, 누락 영역 추진

-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을 평가
 -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, 전문가 회의 개최
 - 국가보고서 이행여부 검토
- 정신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및 발표회
 -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체계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 검토 추진

②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

- 2009. 3. 「정신보건법」 개정 등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권교육 수요 증대(설치 및 운영장은 매년 4시간 이상 교육 의무화)에 적극 대응
- 최근 위원회가 발표한 ‘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와 같이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

-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과정 운영
 - 인권감수성 향상과정, 강사양성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
- 정신보건분야 강사단 구성 및 운영(각 인권사무소별)

- 교육 프로그램 마련, 의무교육 수용 등에 대응

4. 여성인권 강화

① 여성연예인 인권개선 사업

- 2009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
- 연예인 스스로가 권리의식을 갖도록 하는 의식개선 사업 필요
- 아동·청소년들의 연예인 지망 증가 등에 따른 보호책 검토

-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
- 연예계 관계자 간담회 개최
 - 이해관계자 그룹과 공동으로 대안 모색
- 정책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

② 여성노동자 감정노동 및 건강권 대책사업

- 2007. 2008년 유통 및 텔레마케터 여성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의 보호책 부재 확인
- 관계부처, 대기업 콜센터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및 인식확산 촉구 필요

- 전문가 간담회 개최
- 주요 기업 콜센터 관계자 간담회 개최
 - 운영 주체 초빙, 인식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
- 감정노동 및 건강권 대책 정책 검토

③ 성차별 시정 기획조사 강화

-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시 학교의 처리절차나 수사과정의 문제 여전
- TV, 신문광고에서의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거듭된 문제 제기
-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 남녀분리 및 채용인원 차별개선 필요

○ 아동 성폭력 범죄관련 개선방안 마련

- 기획조사(직권) 추진(아동 성폭력범죄 발생 시 학교에서의 처리절차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인권 침해사례 조사)

○ 광고의 성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

- 기획조사(실태) 추진(TV, 신문광고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 및 방송계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기초 마련 등 개선방안 모색)

○ 특정직 성별분리채용 개선방안 마련

- 기획조사(직권) 추진(남녀분리 채용 및 채용인원 차별관련 외국사례 조사 등 결과분석, 공론화 및 대안 마련)

④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개선방안 마련

- 2009년도 결정 권고한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사건과 연계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검토 및 대안 모색

- 공개토론회, 학교관계자 간담회,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
- 청소년 미혼모 정책 선진 해외사례 조사, 수집
-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선안 마련, 권고

- 기획홍보 병행

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

- 북한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
- 북한인권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 고조 및 적극적 역할 증대
- 북한주민, 탈북자, 국군포로, 납북자, 이산가족, 새터민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인권개선 사업 및 활동 필요

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 추진

- 북한내부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관계부처 정책 협의회 개최
 - 북한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, 2개월 1차례 정례화
- 북한내부 인권상황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
 - 분기별 1회 '북한인권포럼' 개최 정례화
 - 북한의 시민적·정치적 권리,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연구 활동
 -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 법·제도적 변화에 대한 연구 활동
-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추진
 - 북한인권 관련 다자간, 양자간, 중장기적 로드맵에 입각한 대북인권 정책에 대한 정책연구(4월 발주, 9월 완료)

○ 홍보 및 단체방문

- 북한인권 관련 자료 영문자료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 (홈페이지 및 실태조사 자료 영문화)
- 월 1회 북한인권 관련 NGO 등 방문을 통한 위원회와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추진

○ 권고 및 의견표명 추진

-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, 북한여성 인권 실태조사,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물을 토대로 관련 사안에 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, 논평 추진
- 긴급현안에 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, 논평 추진(북한 인권법안 및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포함)

② 국군포로·납북자·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사안 해결 노력 추진

○ 국군포로·납북자·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

-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활성화
- 관계기관 및 단체방문을 통한 의견수렴
- 국군포로·납북자·이산가족 문제 관련 관련부처 간 의견수렴

○ 국군포로·납북자·이산가족 문제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

- 법제 검토 및 모니터링을 통한 권고, 의견표명 및 논평 추진
-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관련 비교사례(독일 등) 연구

- 정책연구 지속

③ 새터민(탈북아동) 인권 개선 노력 추진

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정책 방안 모색
 - 탈북 청소년 교육관련 전문가 간담회,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
- 새터민 법률 보호 정책,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
(새터민 지원 조례 신설 등)
- 새터민 정착과정 관련 현시적이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 정책권고(안) 개발